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15. 7. 15.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15년 7월 15일(수) 16:20~20:2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정 찬 우 위 원 장

김 용 범 위 원

김 성 용 위 원

정 석 우 위 원

조 성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15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2015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 보고

- 2015년도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44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5호 『○○○○(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1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 제142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제143호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6호 『(주)동양레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식표시 누락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충실한 감사절차 수행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주식에 차입거래 총액이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조치수준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퇴장

⇒ 일부 감사인에 대한 지적제외, 감사인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제외 및 감사인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위반 동기, 지적금액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7호 『동양인터내셔널(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주식미기재와 관련하여, 감사보고서가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 전에 발행되었고, 회사에게 특수
관계자 거래금액을 수정공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적절한 감사
절차를 취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주시고,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충분하게
기재하였고, 당시 감사가 초도감사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조치수준의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퇴장

⇒ 감사인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위반동기 및 지적금액
변경, 변경된 위반동기와 지적금액을 반영하여 조치수준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8호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최초 감사보고서 발행 시 기준거래금액의 90% 이상을 성실히
공시하였고, 감사인으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계감사
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어떠한 의구심을
가질만한 징후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치수준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퇴장

⇒ 감사인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금액을 변경, 변경된 지적금액을 반영하여 조치수준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9호 『(주)동양(舊동양메이저주)의 연결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감사인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특수관계자간 거래 주식미기재와 관련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잘못된 주식기재를 묵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해당 관련 정보가 충분히, 올바르게 공시되도록 권고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주시고,
장기대여금에 관한 대손충당금과 관련하여, 대여금 회수가능성 검토를 위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수준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퇴장

⇒ 감사인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금액을 변경, 변경된 지적금액을 반영하여 조치수준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0호 『동양시멘트(주)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감사인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식 과소기재와 관련하여, 회사는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진 자금거래의 대부분을 제대로 기재하였고, 감사인은 회사에게 대부분의 거래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되도록 권고하였으며, 누락 금액이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에 비교하여 경미하고,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치수준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퇴장

⇒ 감사인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금액 변경하여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1호 『동양네트웍스(주)의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감사인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특수관계자 기중거래 주식공시 누락과 관련하여, 동 거래는 거래금액 전부가 특수관계자와의 직접거래가 아닌 증권사를 통한 간접거래로서 거래금액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는 K-IFRS 도입 초기로 많은 회사들이 기말잔액 위주로 공시를 했으며, 정보의 질적 중요성 차이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조치수준에 대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퇴장

⇒ 감사인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한 위반동기, 지적금액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2호 『○○○(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금융투자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5년도 증권선물위원회 제13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